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71475	
등록번호	110111-5714757	
상 호	주식회사 스탠다임 (STANDIGM)	. . .
	주식회사 스탠다임 (Standigm Inc.)	2020.03.04 변경 2020.03.11 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201호(역삼동, 청원빌딩)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2층(역삼동, 명우빌딩)	2015.10.29 변경 2015.10.30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9, 6층(역삼동, 명우빌딩)	2016.05.10 변경 2016.05.11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6, 5층(역삼동, 이루미)	2016.09.01 변경 2016.09.07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70, 3층(역삼동, 역삼823빌딩)	2020.06.01 변경 2020.06.08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 주	. . .
	100,000,000 주	2019.03.19 변경 2019.03.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30,000 주	. . .
보통주식	30,000 주	금 15,00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7,500 주	2015.05.20 변경 2015.05.26 등기
보통주식	30,000 주	
제1종전환상환우선주식	7,500 주	금 18,750,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48,046 주	2016.07.30 변경 2016.08.02 등기
보통주식	30,000 주	
제1종전환상환우선주식	7,500 주	
제2종전환상환우선주식	10,546 주	금 24,023,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58,055 주	2019.02.01 변경 2019.02.01 등기
보통주식	30,000 주	

등기번호	571475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제1종전환상환우선주식 7,500 주	금 29,027,500 원	
제2종전환상환우선주식 10,546 주		
제3종전환상환우선주식 10,009 주		
발행주식의 총수 61,057 주	금 30,528,500 원	2019.03.01 변경
보통주식 30,000 주		2019.03.04 등기
제1종전환상환우선주식 7,500 주		
제2종전환상환우선주식 10,546 주		
제3종전환상환우선주식 13,011 주		
발행주식의 총수 69,057 주		2019.11.05 변경
보통주식 30,000 주	2019.11.05 등기	
제1종전환상환우선주식 7,500 주	금 34,528,500 원	
제2종전환상환우선주식 10,546 주		
제3종전환상환우선주식 13,011 주		
제4종전환상환우선주식 8,000 주		

목적		
1.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 인공지능 및 기타 계산과학기법을 이용한 의약품, 약품의 시약, 기초소재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인공지능 및 기타 계산과학기법을 이용한 의약품, 약품의 시약, 기초소재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용역사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전자 상거래업 및 인터넷 관련사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우수기술 등 보유기업 발굴 및 육성 그리고 투자업무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1.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2019.03.19 추가	2019.03.27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김진한 760726-***** 2018년 05월 04일 중임	2018년 05월 11일 등기
대표이사 김진한 76072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91, 103동 1405호(양재동, 우성아파트)	
대표이사 김진한 760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48, 113동 601호(홍제동, 무악청구아파트)	
2015년 08월 20일 주소변경	2015년 08월 25일 등기
2018년 05월 04일 중임	2018년 05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송상옥 740303-***** 2018년 05월 04일 중임	2018년 05월 11일 등기

등기번호	571475
------	--------

사내이사 윤소정 790723-*****
 2018 년 05 월 04 일 중임 2018 년 05 월 11 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

1.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내용

- (1)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상환권 및 전환권을 내용으로 한다.
- (2)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 (3) 회사는 주식의 분할과 병합 또는 주식배당을 행하는 경우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과 방식 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써, 우선주주에게는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써 실시해야 한다.
- (4)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주에 대해서는 그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가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써 신주를 배정 또는 발행한다. 여기서 “지분율”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 (5)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해산시의 우선권, 상환권 또는 전환권을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2.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 (1)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 (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가. 우선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 받는다.

- 1)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ㄱ)발행가액과 (ㄴ)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변제받는다.
- 2) 잔여재산이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 3)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전환상환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다.
- 4) 회사가 제3자에게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도등”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정관에 따라 그 결의시에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는 1)목 내지 3)목에 따른다.
- 5) 본 항의 적용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인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

등기번호	571475
------	--------

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우선주주들이 인정(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서면으로 인정하여야 함)하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거래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의 가중평균 증가.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단,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이사회가 가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회사가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한다. 만일 회사가 반대주주들의 이의제기시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상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나. 우선주주는 청산하는 주요자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매각조건과 동등한 조건하에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 제(2)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x)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y)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등 하는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3) 회사의 신주발행 및/또는 주주의 구주 매각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목적상 ‘경영권의 양도’라 함은 양수인이 그 처분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지분증권 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거래를 말한다

4) 기타 법률 및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해산사유

3.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권

(1) 우선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사유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2) 상환권의 행사기간

가.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되는 날부터 7년 간으로 한다.

나. 행사기간 내에 상환청구서가 발송된 때에는 회사의 실제 수령일에 관계없이 상환권이 적법하게 행사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단, 주식의 분할과 병합, 무상증자 기타 유사한 사유의 발

등기번호	571475
------	--------

생시에는 그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에 의한다)과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8%의 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상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

나.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공정가액(공정가액이라 함은 최근 6개월 사이에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된 가격, 국내 4대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공정한 가격 또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

(4) 상환권의 행사 절차

가. 상환권의 행사는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상환청구서”라 한다)로써 한다.

나. 상환청구서에는 우선주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대상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상환권 행사의 효력 발생 및 순위

상환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상환권 행사의 효력

가. 상환권의 행사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청구대상주식의 상환가액을 그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우선주주는 주권 미발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가액의 수량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수량의 청구대상주식의 주권(단, 주권 분실등의 경우에는 제권판결의 정본)을 회사에 교부하도록 한다.

나.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당시 회사에게 유보된 상환가능이익(이하 “상환 재원”이라고 한다)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이하 “상환가능주식총수”라고 한다)가 청구대상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상환기일에 청구대상주식 총수에 대한 상환의무를 진다.

다. 상환재원은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상환청구연도”라고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관한 결산재무제표상의 배당가능 이익의 총액(상법 제46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청구연도에 중간배당 결의가 이루어진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 1) 배당금 지급결의가 있는 금액
- 2) 상환청구연도 기간 내로서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익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주식소각에 사용된 이익의 액
- 3) 상환청구연도 기간 내로서 상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기행사된 상환권에 의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

(7) 상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일은 회사가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회사가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9) 회사가 상환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최소 단위는 1주로 하며, 그 미만의 단주는 결사한다.

(10) 회사는 행사기간 동안 우선주주의 상환권 행사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해태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한 상환의무를 진다.

(11) 우선주주는 상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청구대상주식의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

등기번호	571475
------	--------

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해 주식에 대한 상환권 행사의 효력은 실효되고, 회사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12)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상환권은 행사기간의 만료 또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상환권이 행사기간 중에 행사되었으나 회사가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하여도 상환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13) 상환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상환의무는 상환재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의해 변경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권

우선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본점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완전히 납입되고 추가 납입의무가 없는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단, 전환상환우선주식의 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아래 제(7)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되나,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단,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식 전체의 2/3 이상을 보유한 우선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 등을 실시할 수 없다).

(3)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4) 전환의 절차: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해당 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단주를 대신하여, 동 단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주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우선주주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식의 주권을 교부받기에 앞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여 이를 회사 또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신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회사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권을 제출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i)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우선주주에게 해당 보통주의 수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하고, (ii)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현금을 지급한다.

(5) 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하여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의 영업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 전환일 현재 해당 보통주식의 등록된 주주로 간주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환된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선주주의 모든 권리(전환상환우선주식 주권의 제출에 따라 보통주식을 지급받고, 동 전환시 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며,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이미 결의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는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중지되며,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전환 이후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될 수 없으며, 어떠한

등기번호	571475
------	--------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되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6) 자동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7)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상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자본조정, 주식의 재분류,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등 직전에 전환상환우선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 등으로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나. 추가주식의 발행에 따른 가격조정

1)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그 발행 직전에 유효한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주식(아래에서 정의됨)을 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은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신발행주식수는 완전회석화 기준으로 계산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 (\text{발행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위 “추가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보통주식을 의미하며,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일체 유형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옵션,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나(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의 사유로 발행되거나 발행될 보통주식은 제외한다.

- 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에 의한 경우
- ② 모든 종류의 주식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는 주식분할, 주식배당 또는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자본조정의 경우
- ③ 주식배당, 주식분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의 정관 또는 본 계약의 조항상 전환가격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이사주조합원에 게 발행하는 보통주식. 다만, 이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전환가격조정에 따른 확인서 :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회사는 우선주주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전환신주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교부한다.

(8) 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 회사는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기준일의 사전 통지 의무: 회사가 현금 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

등기번호	571475
------	--------

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등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주에게 기준일 20일 전에 그 이익배당, 권리의 부여 등을 위해서 결정된 기준일과 이익배당, 권리의 수량 및 성질을 특정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2015년 05월 20일 변경 2015년 05월 26일 등기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인수인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효력 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 ⑤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 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남은 잔여재산을 본건 우선주와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비율대로 분배를 받는다.
- ③ 회사가 청산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등기번호	571475
------	--------

경우, 인수인은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재산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인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 및 양도가격을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위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매각대상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인수인에 대한 위 서면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단, 회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ㄱ.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ㄴ.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지적재산권이 제 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ㄷ.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ㄹ. 회사의 신규 지분증권 발행, 보통주식 주주의 구주 처분(보통주식 주주에 대한 공동매도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공동매도되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매각분도 포함) 및/또는 회사가 보유하는 지분증권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⑤ 본 조의 목적상 '회사의 경영권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신주인수인을 포함)이 회사 발행의 지분증권 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자기의 계산(세법상 특수관계인의 계산을 포함)으로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련의 거래를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분배될 재산이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공정가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본건 우선주주 및 이해관계인 각각 선임한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액을 공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건 우선주주가 부담한다.

⑦ 당사자 모두는 본 조항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관 변경 및 종류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전환기간: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등기번호	571475
------	--------

②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ㄴ.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ㄷ.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ㄴ)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ㄹ. 회사는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ㄱ.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ㄴ. 회사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아래와 같이 가중평균 방식으로 조정한다. 단,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발행가액/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ㄷ.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ㄹ.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ㄱ.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ㄴ.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ㄷ.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

등기번호	571475
------	--------

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상환청구권: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환조건: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2종 전환상환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07월 30일 설정 2016년 08월 02일 등기

제3종 전환상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등기번호	571475
------	--------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전환은 투자자가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 1.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1주로 한다.
- 2.[IPO 리픽싱]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70]%에 해당하는금액이그당시의본건우선주식의전환가격을하회하는경우는전환비율을다음과같이조정한다.

$$\text{조정후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보통주의수} = \text{조정전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보통주의수} \times \frac{\text{조정전본건우선주식의전환가격}}{\text{회사의 IPO 공모단가의[70]\%에 해당하는금액}}$$
- 3.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등기번호	571475
------	--------

4.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1\}$$

N_i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M&A 리팩싱]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6.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거래완결일의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이에 대한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중

등기번호	571475
------	--------

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년 01월 31일 설정 2019년 02월 01일 등기

제4종 전환상환우선주식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2.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0]%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 ②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 ①①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4. 전환권에 관한 사항

- ①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언제든지 본건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가전항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

등기번호	571475
------	--------

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건 종류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IPO 리픽싱]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3.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M&A 리픽싱]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① 투자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

등기번호	571475
------	--------

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②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을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이에 대한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④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7.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며, 위 사항 이외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9년 11월 05일 설정 2019년 11월 05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와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등기번호	571475
------	--------

<p>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p> <p>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p> <p>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p> <p>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p> <p>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p> <p>< 2020년 03월 04일 변경 2020년 04월 03일 등기 ></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p> <p>1)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p>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

회사성립연월일	2015년 05월 04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5년 05월 04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등기번호	571475
------	--------

열 램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